



## 2013년도 산재보험료율·바뀌는 제도

# 인쇄업 · 경인쇄업 공히 10/1000으로 통합 적용

인쇄업과 경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이 통합돼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제책업의 요율도 소폭 하락하는 등 2013년의 산재보험료율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 또한 최저 임금은 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세 가산세가 최고 40%로 향상되고, 상습 지방세 체납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인쇄업 및 경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1000, 제책 및 인쇄물 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은 25/1000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16/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던 인쇄업이 신문, 화폐 발행, 출판업, 경인쇄업 등과 통합되면서 모두 10/1000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제책 및 인쇄물 가공업의

요율은 지난해 26/1000보다 1포인트 낮은 25/1000로 책정됐다.

2007년 21/1000이었던 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과 2012년 16/1000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고시를 통해 신문, 화폐 발행, 출판업, 경인쇄업과 통합되면서 10/1000까지 낮아졌다. 제책 및 인쇄물 가공업은 2007년 29/1000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1년과 2012년 26/1000, 올해 25/1000까지 하락했다.

〈표1〉 2013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0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29	기타제조업	31
채석업	2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77	4. 건설업	37
기타 광업	6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석도운수업	8
식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취급사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책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운수관련 서비스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창고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통신업	8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6. 임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7. 어업	
유리 제조업	17	어업	2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8
시멘트 제조업	27	8. 농업	2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2	9. 기타의 사업	
금속제련업	1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도금업	2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2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로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확대되며,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됐으며,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됐다.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성년 기준 하향 조정은 청소년 조속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는 현행 만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1953~56

**최저임금 280원 인상·성인 기준 만19세로 하향**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280원 인상(일급 3만8880원, 월급 44시간제 109만8360원·40시간제 101만5740원)됐는데,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및 감시·단속 근로자(경비 등)는 10% 감면된다. 4인 이하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50% 이상으로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100% 지원된다. 산재로 인한 근

년생 만61세, 1957~60년생 만62세, 1961~64년생 만63세, 1965~68년생 만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만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만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만56세~만60세로 기준이 상향됐다.

지방세 신고를 할 때 허위 또는 부정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최고 40%로 인상됐다. 상습 지방세 체납의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표2〉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등 발행 및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서적, 팸플릿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li> <li>• 인쇄를 행하는 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li> <li>•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li> <li>•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li> <li>• 음반 제조업, 음반,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타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li> </ul>
인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판인쇄, 첩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책까지를 행하는 사업</li> <li>-단식오프셋, 그라비아, 일반오프셋</li> <li>•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li> <li>• 프린트, 공판, 마스타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li> <li>• 현수막 제작(단순출력, 제작설치)</li> <li>•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 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li> </ul>